
문서번호 : 16-05-통일위-02
수 신 : 언론사 제위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및
접견신청 경과
전송일자 : 2016. 5. 16. (월)
전송매수 : 총 3매

[민변 통일위원회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및 접견신청 경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5. 16. 오후2시 민변 통일위원회 변호사 13명은 40일째 구금되어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접견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접견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13일 8명의 변호사가 접견신청서(1차 신청)를 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16일 오전 ① 탈북민 관련시설은 북한테러 등 신변위협에 대한 보호시설이지 구금 시설이 아니며 ② 식당 종업원 12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통보를 받는데 이른 2차 신청이었습니다.
3. 그러나 국정원 담당자는 “오늘 오전에 답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접견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변호인들의 공동서신과 권리보장 알림글, 편지지 및 메모지, 책 위임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등의 반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유해물질 등이 포함됐을 위험성이 있어 제3자로부터 물품 반입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 물건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반입이 안된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였습니다.
4. 국정원 관계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12명이 있는 것이 맞는지, 변호인들이 접견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어떤 규정에 의해 접견 및 물품 반입이 금지되는지 묻는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신청’ 방식으로 접견신청(2차)과 서신 및 물품 반입신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민원신청 방식으로 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받아가라며 입장이 바뀌고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5. 국정원은 신청 후 30분가량 지나서 접견, 물품전달, 서신전달 신청에 대한 각 접수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국정원 담당자는 일단 접수증은 수령하였으나 접견과 서신 및 물품전달 모두 거부하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1차 신청에 대한 거부이유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은 접견의 대상자가 아니고, 변호인의 지위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신과 물품 역시 전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물품을 반송할 주소를 재차 확인하였고, 구체적인 민원처리결과의 이유는 추후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 이에 변호사들은 이미 한차례 있었던 접견 거부처분과 향후 있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그 위법성을 다룰 예정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접견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붙임1. 경과보고, 3p>

<붙임2.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5p>

<붙임3. 알립글-변호인을 통한 권리 보장의 방법, 9p>

<붙임4. 접견신청서, 16p>

<붙임5. 접견신청 접수증, 17p>

<붙임6. 서신전달 민원 접수증, 18p>

<붙임7. 물품전달 민원 접수증, 19p>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붙임1. 경과보고

- 4.08 - 정부는 통일부를 통해,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 일하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4월 5일 밤 중국식당을 빠져 나와 6일 새벽 말레이시아를 거쳐 7일 서울에 도착했다고 밝힘
- 4.12 - 북측은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통해 첫 공식입장 발표,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전대미문의 집단적인 유인 납치행위"라고 주장, "사회와 그들 모두를 즉각 돌려보내야한다"고 요구
- 4.12 -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 귀순은 순전히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으로 북한의 억지 주장은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고 입장을 밝힘
- 4.15 - 북측의 <우리민족끼리>는 '국가정보원이 중국 식당의 지배인을 매수, 종업원들을 집단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 계획적인 유인납치극을 실행했다'고 주장
- 4.18 - 여종업원 부모들이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서한을 보내 '인권과 인도주의를 보호하는 사명을 띤 유엔 인권 당국이 딸들이 조속히 부모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호소
- 4.18 - 류경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다른 종업원들이 평양에서 CNN과 인터뷰를 하고 '동료들이 납치됐다'고 주장
- 4.18 -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 북측의 '유인. 납치' 주장에 대해 '허무맹랑하다'고 일축
- 4.21 - 북측의 리충복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종업원들과 가족의 대면을 요구하며 가족을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보내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냄
- 4.22 - 통일부 입장자료를 통해 '가족 대면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 4.19~22 - 북측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민주여성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등 각계가 '유인납치된 우리 여성, 노동자, 가족에 대해 무조건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
- 4.24 - 북측의 <우리민족끼리TV>, 류경식당에서 함께 일한 다른 종업원 7명의 인터뷰영상을 공개
- 4.26 - 민권연대 기자회견 진행, "박근혜 정부는 북풍용 기획탈북 의혹에 대한 진상을 공개하라!"
- 4.27 - 북측의 <우리민족끼리TV>, 북측의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
- 4.28 - 북측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여성 국민들을 무조건 즉시 송환해야 한다"면서 "피해자 가족들의 일치한 요구대로 그들이 서울에 나가 자식들을 직접 만나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적 조치를 시급히 취해

- 야 한다”고 촉구
- 4.28 - 북측의 리충복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중국 해외식당 종업원의 송환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국제적십자사(ICRC) 서울 사무소를 통해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전자메일로 전달
 - 5.03 - 북측의 <조선중앙통신>은 <집단유인납치만행을 폭로규탄하는 종업원들, 피해자 가족들과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고 보도
 - 5.09 - NK투데이, 북측 여성 12명 중 한 명 단식도중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단독보도
 - 5.10 -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성명발표, “북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탈북 사건 관련 의혹 신속히 규명돼야한다.”
 - 5.10 - 민변 북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 대응 긴급 대응모임 개최
 - 5.12 - 민변 통일위원회, 이번 집단탈북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해 천병윤 국정원 대변인 이메일로 접견신청서를 발송, 전화통화 완료. 장경욱, 신윤경 변호사가 국정원 면회실을 직접 방문하여 접견신청서 접수증을 전달 받음.
 - 5. 15 - 천병윤 대변인 월요일 오전중으로 국정원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답변.
 - 5. 16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수차례 언급했지만, 이번 탈북민은 자유의사에 따라서 입국한 것"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한 초기단계에 있고,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들의 외부인 접견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 북한의 한 매체가 북한식당 여성 종업원 12명이 금식을 하다가 1명이 사망했다고 최근 보도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집단 탈북 북한식당 종업원의) 건강상태는 좋다" 고 밝힘.
 - 5. 16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접견 기자회견 및 접견신청

붙임2.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리은경, 한행복, 리선미, 리지혜, 리춘, 금혜성, 류송영, 전옥향, 지정화, 박옥성, 금설경, 서경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여러분과 우리 변호사들 사이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면담이 남한(대한민국) 정부와 국가정보원의 위법 부당한 반인권적 조치에 의해 성사되지 못한 것입니다.

1. 우리들은 남한(대한민국)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고 합니다)은 1988년 5월경 당시 우리 민족의 통일과 사회의 민주화 등을 위하여 헌신하시던 변호사 51명으로 출범한 민간단체로서, 현재에는 1,000명이 넘는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그 산하에 통일위원회,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노동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등 14개의 위원회가 있고, 서울 이외 각 지역에 8개의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우리 민변의 회원으로 계셨습니다.

우리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여러분과 같이 북한(조선)의 주민으로 있다가 남한(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률적·제도적 개선 등을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고, 유우성 선생, 홍강철 선생과 같이 북한(조선)의 주민으로 있다가 남한(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간첩으로 조작된 이들에 대해 무죄를 받아내는 등 변호 활동 뿐만 아니라, 남한(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7.4 남북 공동성명, 6.15 선언, 10.4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대중적인 활동에도 헌신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남한(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곧바로 북한(조선)의 가족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김련희씨의 북한(조선) 송환 운동에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적극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2. 남한(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4월 8일 여러분들이 '3일전인 4월 5일 중국 닝보 소재 류경식당을 이탈하여 말레이시아를 거쳐 4월 7일 자발적으로 남한(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조선)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민주여성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등에서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유인·납치행위이며 즉각 사죄하고 그들을 모두 북한(조선)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류경식당에서 여러분과 같이 일하였던 동료 분들이 평양에서 미국 CNN과 만나 여러분이 자진하여 남한(대한민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던 내용이 전 세계로 방송되기도 하였습니다. 4월 18일에는 북한(조선)의 여러분 가족들이 UN인권이사회, UN인권최고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딸들이 조속히 부모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UN인권 당국이 도와줄 것'을 호소하였고, 4월 21일에는 북한(조선)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충복이 남한(대한민국)의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에게 공식 통지를 통하여 여러분과 가족들간의 대면을 요구하며 '가족들을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보내겠다'고 하였는 바, 바로 그 다음 날인 4월 22일 남한(대한민국) 정부는 '가족 대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도 남한(대한민국) 정부는 여러분이 자발적인 의사로써 남한(대한민국)으로 들어 왔고,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등 남한(대한민국) 정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 어떠한 내용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남한(대한민국)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여러분의 입국 경위, 자발적 탈북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러분 중 한명이 북한(조선)으로의 송환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던 중 끝내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3. 지난 5월 13일에는 민변 통일위원회를 포함한 남한(대한민국) 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분의 공개적인 기자회견과 질의응답, 북의 가족과의 대면과 변호인 접견 등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여러분이 남한(대한민국)으로 오시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상을 밝히고자 대책모임을 구성하여 다

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변호사들은 여러분으로부터 남한(대한민국)으로 들어 오시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조언을 드리고자 하였던 것이며, 혹시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대한민국)으로 오셨거나, 들어오실 때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북한(조선)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하는 경우 북한(조선)으로 귀환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직접 만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여러분을 외부와 철저히 격리·차단된 장소에서 수용하고 있는 남한(대한민국) 당국의 위법한 인권침해 조치에 대한 시정, 그리고 원하시는 경우 조속한 북한(조선)으로의 귀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 남한(대한민국) 및 북한(조선) 당국의 각 주장, 북한(조선)에 계신 여러분의 가족과 동료들의 소식 등을 담은 신문기사와 자료, 인권보장 및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여러분 스스로가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한 글(첨부 알림글 - 변호인을 통한 권리보장의 방법), 여러분께 큰 위로와 용기를 줄 책, 편지지, 일기장 등도 이 편지와 함께 동봉합니다. 부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 앞으로 겪으시는 일들을 일기장이나 노트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시고, 본인 및 같이 계신 동료 분들의 상황을 외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요구를 당당히 제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변호사들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는 꼭 만나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첨부 : 알립글 - 변호인을 통한 권리보장의 방법

2016. 5.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변호사 권정호,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 김자연, 변호사 설창일, 변호사
신윤경, 변호사 양승봉,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채희준,
변호사 천낙봉

붙임문서3. 알림글 - 변호인을 통한 권리 보장의 방법

(이 글을 읽으시고 적절한 대책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입니다. 저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통일위원회는 한국(남조선)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가권력기관으로 인하여, 예를 들면 한국(남조선)의 국가정보원이나 경찰 등에 의해서 생겨난 피해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곳으로 찾아오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나서 자란 고향과 부모형제,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떠나 본인의 자유의사로 한국(남조선)에 집단귀순했다는 것을 북한(조선) 정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믿지 않고, 여러 신문과 잡지, 방송들을 통해서 한국(남조선)의 국가정보원이 유인, 납치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인으로서 확인된 사실에 기초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역할은 여러분들로부터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언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의사와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4월 7일, 한국(남조선) 정부는 북한(조선)의 해외식당 종업원들인 여러분들이 한국(남조선)의 실상과 북한(조선) 체제 선전의 허구성을 느껴 자유의사로 집단탈북 했다고 여러분들의 사진과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집단적으로 한국(남조선)으로 왔다는데 대해서는 한국(남조선)에 온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한국(남조선)에서도 전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남조선) 정부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한국(남조선)으로 귀순하였고, 국가정보원은 여러분들의 한국(남조선) 입국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발표 이외에 어떠한 정보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준 자료들에서 보았듯이, 북한(조선) 정부와 여러분 가족

들은 여러분들이 한국(남조선)에 올 사람들이 아니라면서, 지배인과 국가정 보원에 의해 유인, 납치되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돌려보내라고 주장하고 있 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판문점이나 한국(남조선) 지역에서 여러분들과의 가족 면 담을 요청하고 있고, 유엔인권사무최고대표 및 유엔인권이사회의장 앞으로 한국(남조선) 당국이 강제적으로 납치한 여러분들을 가족이 있는 고향의 품 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움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다에서 표류되어 한국(남조선) 지역에 들어왔다가 도 구조되어 북한(조선)으로 송환된 사람들도 있고,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 도 송환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본 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입국한 것이 아니거나, 비록 자의로 입국했다고 하여 도 이젠 돌아가려고 생각을 바꿨다고 한다면, 고향의 가족들 품으로 반드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희는 변호인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진상을 밝히 고, 그에 기초하여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곳에 온 것이며, 여러분 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시고자 하거나 그밖에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필요한 도움을 얻으려 하신다면 우리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즉, 북한(조선) 정부와 여러분 가족들의 주장과 같이 한국(남조선)까지 왔다 면, 우리는 지금부터 한국(남조선) 사회와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역 량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무료로 변론할 것이며, 한국(남조선) 사회의 수많은 성원들의 도움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그 어떤 외부의 압력과 위 협으로부터 여러분의 생활과 안전을 보호 할 것입니다.

이곳에 구금을 당한 여러분의 권리에 대하여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리겠 습니다.

1. 지금까지 이 곳 조사과정에 진술한 내용들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곳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가족을 비롯한 외부와의 일체의 접촉과 도움이 없는 상태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회유와 강요, 속임수 등의 방법에 의해서 잘못된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 곳에서 진술한 내용들은 그 법적 효력이 없고, 이를 공개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잘못된 사실을 진술하였을 경우, 즉 허위진술을 했을 경우에도 법률적으로는 오직 사실에 기초한 진술만 효력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사실 그대로만 우리들에게 말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이미 전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였든지 관계없이 지금부터 하는 말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들에게 진실만 말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비밀을 지킬 것이고, 그 누구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에도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은 변호사의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설명을 이해하셨습니까?

한국(남조선)과 북한(조선)의 사법절차가 완전히 다르고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의문되는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허물없이 물어봐 주십시오.

2. 여러분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태를 가족 등 외부에 알리도록 할 권리가 있고, 외부 가족 및 변호인 등과 연락과 면담 등 외부와 충분히 접촉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소, 조사를 받는 장소를 가족들에게 통지하도록 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을 가족들에게 알리

는 것을 방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 가족과 외부 변호인과 자유롭게 면담할 수 있으며, 면담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는 거의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저희들과 같은 변호사는 여러분들과 같이 구금된 사람들을 위하여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전문직업 종사자입니다.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은 국가정보원 직원이나 경찰관을 일체 참여케 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비밀 담화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의뢰를 받아 여러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이곳에서 한국(남조선) 당국이나 관계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족들과 면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일이 있습니까?

이곳에서 한국(남조선) 당국이나 관계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변호인과 비밀담화를 통해 변호인의 도움을 계속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일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고향의 가족들의 방문을 받아 판문점 또는 한국(남조선) 지역, 또는 이곳에서 면회할 수 있고 서신 연락 등으로 가족들과 연락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남조선) 당국으로부터 이러한 권리를 고지받은 적이 있습니까?

3. 구금되어 조사를 받는 여러분들은 조사자가 원하거나 요구하는 질문에 대하여 일체의 대답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묵비권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진술을 거부할 권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도 진술을 강요할 권리가 없으며 강요에 의해서 한 진술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곳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으로부터 이러한 권리를 고지받은 적이 있습니까?

조사관으로부터 그 어떤 진술의 대가에 대하여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제안은 위법행위입니다. 이곳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4.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선택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여러분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지시나 강요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 종교집회에 참가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까?

이 곳에서 진술서를 쓰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까?

이 곳에서 독방에 갇힌 적은 없었습니까?

이 곳에서 교육에 참가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종교집회나 교육 등에 참가할 의무가 없고 진술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으며 여러분들을 외부와 접촉을 못하게 하고 독방에 가두는 것은 국제법상 고문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5. 여러분들은 중국을 떠나서 이곳에서 수용되어 지금까지 조사 등을 받는 가운데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 인권 침해를 받은 일이 있다면 지금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국(남조선)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외국과 한국(남조선)의 신문, 방송국 기자들이 오늘 면담과정에 대한 소식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남조선)에 오기를 원했습니까?

한국(남조선)으로 오게 된 경위에 대해 말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고향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자신들에 대한 기사나 고향의 가족들의 구명 요청 등이 국제적으로 기사화되었다는 것을 한국(남조선) 당국으로부터 통지받거나 위와 같은 소식을 담은 언론 기사를 읽거나 방송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북한(조선)에 있는 가족들에게 자신들이 처한 지금의 환경과 처지 및 입장에 대해서 편지로 알릴 의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편지를 작성해 면담 시 전해주거나 변호인의 사무실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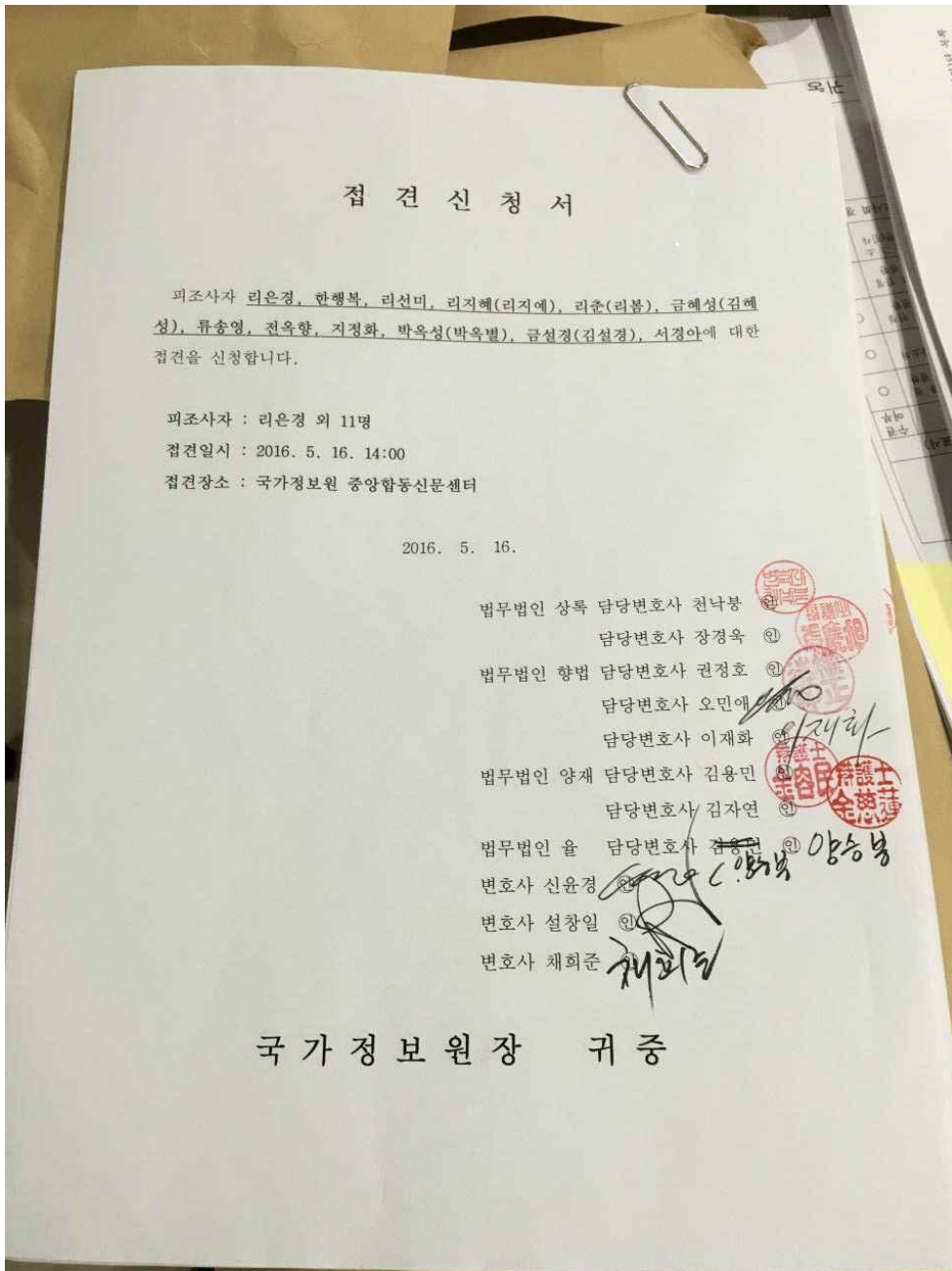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라도 저희들에게 부탁할 수가 있으며, 저희들은 무료로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면회를 요청하거나 전화나 서신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남조선) 당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이는 위법 부당한 반인권적 조치로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들은 그와 같은 조치에 대해 유엔과 한국(남조선)의 법원(재판소)과 한국(남조선)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여러분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시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취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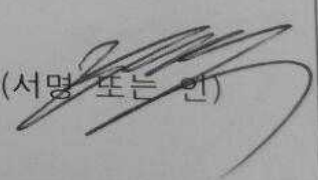
여러분들이 고향의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발생할 일체의 문제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들을 변호인 등으로 선임하여 주시다면 저희들은 여러분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일이라도 저희들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필요한 경우에 언제라도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저희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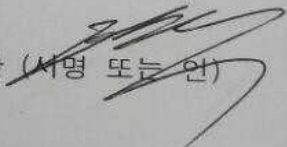
붙임4. 접견신청서




붙임5. 접견신청서 접수증

접 수 증	
제 16-서- 2호	
접수일: 2016. 05. 16	
① 민원명	접견신청서(북한이탈주민)
② 민원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장경옥
③ 처리예정기한	접수일로부터 30日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장 가능
④ 처리주무부서	국가정보원 민원담당
⑤ 안내사항	민원처리 관련 문의시 111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민 원 접 수 자 : 민원담당관 (서명 또는 인)</p> 	
<p>국 가 정 보 원 민원담당</p>	

붙임6. 서신전달 민원 접수증

접 수 증	
제 16-서- 3호	
접수일: 2016. 05. 16	
① 민원명	서신전달 민원(북한이탈주민)
② 민원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장경욱
③ 처리예정기한	접수일로부터 30日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장 가능
④ 처리주무부서	국가정보원 민원담당
⑤ 안내사항	민원처리 관련 문의시 111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민 원 접 수 자 : 민원담당관 (서명 또는 인)</p> 	
<p>국 가 정 보 원 민원담당</p>	

붙임7. 물품전달 민원 접수증

접 수 증	
제 16-서- 4호	
접수일: 2016. 05. 16	
① 민원명	물품전달 민원(북한이탈주민)
② 민원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장경옥
③ 처리예정기한	접수일로부터 30日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장 가능
④ 처리주무부서	국가정보원 민원담당
⑤ 안내사항	민원처리 관련 문의시 111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민 원 접 수 자 : 민원담당관 (서명 또는 인)</p> 	
<p>국 가 정 보 원 민원담당</p>	